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가단101878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일

피 고 C

변론 종결 2019. 8. 8

판결 선고 2019.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가. 양주시 D 대 431m2중 별지 도면 표시 1, 24, 25, 26, 27, 28, 29, 30, 31, 32, 1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十' 부분 82m2지상 건물을 철거하고,나. '기' 부분 토지 82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양주시 D 대 43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원고 A 3분의 1, 원고 B 3분의 2의 비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4, 25, 26, 27, 28, 29, 30, 31, 32, 1을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2m²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21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주시사에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n 부분 및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위 n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계훈영

별지